

이 보도자료는 2019. 12. 19.(목) 18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박기중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

보도자료
2019. 12. 19.(목)

제목

대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 수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(부장검사 김민형)는 2019. 6. ~ 12. 대구 서구 소재 △△지역주택조합(이하 '△△조합')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,
 - ㉠ 업무대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1억 7,500만원 가량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조합장 및 위 업무대행사 대표,
 - ㉡ △△조합의 토지매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그 알선료 명목으로 32억원 가량을 수수한 대출브로커 2명,
 - ㉢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시공사 임원 2명 및 지역농협 대출담당자 3명 등**총 16명을 입건하여 그 중 9명을 구속 기소,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**
- 또한 위 조합장, 대출브로커, 지역농협 대출담당자들로부터 **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 중인 재산(가액 합계 60억원 상당)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하였음**
- 수사결과, 전국에 있는 여러 지역주택조합 대출 과정에 대출브로커가 개입하고, 금융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출 대가를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바, **금융감독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수사사례를 공유하여 지역주택조합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**

1

사안 개요

- 대구 △△조합은 대구 서구 일대 31,551㎡에 약 1,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1,3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음
 - △△조합의 조합장과 용역업체들 사이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여 조합장, 용역업체 관계자, 금융기관 관계자 등 총 16명을 입건하여 그 중 9명을 구속 기소하고,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- ※ '19. 12. 12. 위 조합장 및 용역업체 대표 등에 대하여 모두 1심 유죄가 선고되었음
(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)

2

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**피고인 A** (△△조합 조합장)
 - 2018. 8.경 △△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△△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로 합계 약 1억 7,500만원 수수 [배임수재]
 - **피고인 B** (업무대행사 대표)
 - 2018. 12.경 조합장 A에게 업무대행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억원 교부 [배임중재]
 - **피고인 C, D** (각 △△조합의 시공사 이사 및 전무)
 - 공모하여, 2018. 12. ~ 2019. 2.경 대출브로커 E가 △△조합과 대출알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, 그 대가로 현금 6억원 수수 [배임수재]
 - **피고인 E, F** (각 불법 대출브로커)
 - 공모하여, 2018. 8.경 △△조합이 1,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, 약 32억원 수수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
 - **피고인 G, H, I** (각 지역농협 대출담당자), **피고인 J, K** (각 지역새마을금고 임원)
 - 2018. 11.경 대출브로커 E, F의 알선으로 △△조합에 대출을 해주고, 그 사례로 각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, 차량 등 수수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
- 【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는 별지 참조】**

3

주요 수사 및 재판 경과

- 2019. 7. 9. 불법 대출브로커 E, F 각 구속 기소
- 2019. 7. 11. 시공사 이사 C 구속 기소
- 2019. 7. 18. 시공사 전무 D 구속 기소
- 2019. 10. 10. 조합장 A, 업무대행사 대표 B 각 구속 기소
※ 용역업체 대표 M 등 5명은 같은 날 불구속 기소
- 2019. 11. 4. 지역농협 대출담당자 G, H 각 구속 기소
- 2019. 11. 19. 지역농협 대출담당자 I 구속 기소
- 2019. 12. 12. 조합장 A, 업무대행사 대표 B 등에 대한 1심 유죄 선고
※ 조합장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선고
- 2019. 12. 19. 지역새마을금고 임원 J, K 각 불구속 기소

4

수사 결과

1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비리 수사

-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모여 주거 마련을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, 조합장의 주도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감시가 어려워 각종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이 오고갈 가능성이 높음
- 압수수색,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합장 A가 용역업체 대표들로부터 ㉠자금세탁된 현금 수수, ㉡차명계좌 이용 금원 수수, ㉢지인의 취업을 가장하여 급여 명목 금원 수수 등 다양한 형태로 대가성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


2 지역주택조합 대출 과정에서의 비리 수사

- 금융 분야 사회경험이 없는 대출브로커 E가 1,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, 위 브로커가 자금세탁하여 현금화한 자금을 금융기관 임직원 및 시공사 임원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음
※ 또한,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여러 지역주택조합의 대출금 중 수익원을 빼돌려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실적을 쌓고 모집비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

③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및 금융감독원 통보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

- 위 조합장, 대출브로커,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 중인 실제 재산가액 60억원 상당의 부동산, 채권, 금융재산, 승용차 등에 대하여 몰수·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하였음

- 또한,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과 회의를 개최하여 본건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비위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, 수사 사례를 공유하여 전국 지역주택조합 대출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

※ 수사 결과, △△조합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러 지역주택조합 대출 과정에 대출브로커가 개입하고, 금융기관들이 ‘甲’의 위치에서 지역주택조합 및 대출브로커로부터 부정한 대출 대가를 수수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음 

[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리 결과]

순번	피고인	직위	주요 공소사실 요지	1심 선고 결과
1	A(54세) 구속 기소	△△조합 조합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8. 10. ~ 2018. 12.경 용역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업무대행사 대표, 토지용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합계 1억 7,500만원 수수【배임수재】 ○ 위와 같이 용역계약 체결 대가를 수수하면서 차명 계좌를 통해 수수하여 그 취득 사실을 가장【범죄수익은닉법위반】 	징역 1년 6월
2	B(46세) 구속 기소	업무대행사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8. 12.경 조합장 A에게 용역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합계 약 1억원 교부【배임증재】 ○ 2015. 11. ~ 2018. 9.경 회사 자금 2억 8,5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【업무상횡령】 	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
3	C(48세) 구속 기소	시공사 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무 D와 공모하여, 2018. 12. ~ 2019. 2.경 대출브로커 E로부터 대출알선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현금 6억원 수수【배임수재】 	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
4	D(49세) 구속 기소	시공사 전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무 C와 공모하여, 2018. 12. ~ 2019. 2.경 대출브로커 E로부터 대출알선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현금 6억원 수수【배임수재】 	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
5	E(41세) 구속 기소	대출브로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8. 8.경 F와 공모하여 △△조합과 대출알선계약을 체결하고, 농협,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약 32억원 수수【특경법위반(알선수재)】 ○ 2018. 12. ~ 2019. 2.경 시공사 임원 C, D에게 대출알선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현금 6억원 교부【배임증재】 ○ 2018. 11. ~ 2019. 6.경 △△조합에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농협 대출담당자 G, H, I 및 새마을금고 임원 J, K에게 각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, 차량 등 공여【특경법위반(증재등)】 	징역 1년 6월, 집행유예 3년
6	F(39세) 구속 기소	대출브로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8. 8.경 E와 공모하여 △△조합과 대출알선계약을 체결하고, 농협,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약 32억원 수수【특경법위반(알선수재)】 	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
7	G(45세) 구속 기소	지역농협 대출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9. 3.경 대출브로커 E로부터 △△조합에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억원 수수【특경법위반(수재등)】 ○ 2018. 5.경 I와 공모하여 여러 지역주택조합에 대출을 해준 후 그 대출금 중 2억 7,000만원 가량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【업무상횡령】 	1심 재판 중
8	H(38세) 구속 기소	지역농협 대출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9. 3.경 대출브로커 E로부터 △△조합에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 5,000만원 수수【특경법위반(수재등)】 	1심 재판 중
9	I(43세) 구속 기소	지역농협 대출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9. 6.경 대출브로커 E로부터 △△조합에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1,300만원 상당의 외제 중고 차량 등 수수【특경법위반(수재등)】 ○ 2018. 5.경 G와 공모하여 여러 지역주택조합에 대출을 해준 후 그 대출금 중 2억 7,000만원 가량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【업무상횡령】 	1심 재판 중

10	J(女, 50세) 불구속 기소	지역새마을금고 상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8. 11.경 K와 공모하여 대출브로커 E로부터 △△ 조합에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2,000만원 가량을 수수【특경법위반(수재등)】 ○ 2019. 4.경 K와 공모하여 남양주 소재 □□지역주택 조합에 대출을 해준 후 그 대출금 중 1억 4,600만원 가량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【업무상횡령】 	1심 재판 중
11	K(女, 56세) 불구속 기소	지역새마을금고 전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8. 11.경 J와 공모하여 대출브로커 E로부터 △△ 조합에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2,000만원 가량을 수수【특경법위반(수재등)】 ○ 2019. 4.경 J와 공모하여 남양주 소재 □□지역주택 조합에 대출을 해준 후 그 대출금 중 1억 4,600만원 가량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【업무상횡령】 	1심 재판 중
12	L(49세) 불구속 기소	업무대행사 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 B와 공모하여, 2015. 11. ~ 2018. 9.경 회사 자금 6,2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【업무상횡령】 	벌금 500만원
13	M(54세) 불구속 기소	토지용역업체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8. 10. ~ 2019. 4.경 조합장 A에게 용역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합계 2,500만원 교부【배임증재】 	벌금 500만원
14	N(53세) 불구속 기소	토지용역업체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8. 12. ~ 2019. 4.경 조합장 A에게 용역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합계 3,000만원 교부【배임증재】 	벌금 500만원
15	O(58세) 불구속 기소	토지용역 하도급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8. 10.경 조합장 A에게 용역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2,000만원 교부【배임증재】 	벌금 500만원
16	P(45세) 불구속 기소	분양대행업체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9. 3.경부터 2019. 5.경 회사 자금 5,3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【업무상횡령】 	벌금 500만원